

의안번호	2218309
의 퇴 인	황명선 의원
회 답 일	2026. 5. 22.
추계번호	26B2119

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기간 제근로자의 사 용)	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분포현 황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.(제3항 신설)	의무규정
2	안 제8조(차별 적 처우의 금 지)	사용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에게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사업장 동일 직무 정 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 다.(제3항 신설) 제3항에 따른 가산수당의 비율 및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한다.(제4항 신설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조(기간 제근로자의 사 용)	×	-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 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본문 참조
2	안 제8조(차별 적 처우의 금 지)		

2. 상세 사유

- (안 제4조제3항)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업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분포현황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다만,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기업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현황에 관한 자료 수집 방법과 공표 대상 기업의 범위 및 공표 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
- (안 제8조제3항) 개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사업장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개정안은 가산수당의 비율 및 산정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며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가산수당의 적용대상, 감면·면제 범위, 지급요건 및 지원단가와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 산출에 필요한 다양한 변수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
-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